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인 업무범위 고시〉

■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50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

(3) 회 부 일 : 2024. 8.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의료인)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할 수 있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각각 그 임무로 하고 있음.¹⁾
 - 다만, 업무 범위가 “의료” 및 “보건지도” 등 추상적인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²⁾
- 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 범위 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이르고, 간호인력의 수술보조행위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현황(2021.~2024.6.) >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6
소계	630	116	146	274	94
의사-한의사	62	11	13	30	8
의사-치과의사	74	18	15	29	12
의사-간호사	150	28	40	60	22
간호사-간호조무사	113	18	17	61	17
간호사-의료기사	216	38	60	84	34
약사-한약사	15	3	1	10	1

자료: 보건복지부

□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임.

- 2019년에 구성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³⁾는 같은 해 ‘진료보조업무범위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 범의를 구체화하여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이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 6월부터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의료법체계연구회’⁴⁾는 「의료법」의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전문

3)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함.

4) 위원장 1명, 의료분야 3명, 간호·요양분야 3명, 법률분야 2명으로 구성됨.

회차	논의 주제
1차('23.9.15.)	위원회 운영 방안, 목표, 회차별 논의주제(안) 공유
2차('23.9.27.)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과 검토 필요과제
3차('23.10.18.)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 체계 비교
4차('23.11.1.)	간호 관련 현안 : 법과 현실
5차('23.11.15.)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제도
6차('23.11.29.)	노인 요양·돌봄과 의료법 개선 과제
7차('23.12.13.)	의료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간담회('23.12.28.)	의료법체계 연구회 -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8차('23.12.27.)	의료법의 개선과 의료행위의 쟁점
9차('24.1.30.)	의료법체계 개편 관련 권고문 논의
10차('24.2.20.)	

출처: 보건복지부

가,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등도 논의 사항에 포함됨.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행정청이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함.

즉,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한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⁵⁾를 살펴 개정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간호사의 경우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의 경우 의료기사등의 업무영역과의 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바,⁶⁾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

5) 2024.7.1. 발의, 2024.7.2.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6)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표시할 때 「간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일부수용)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와 관련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할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추후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30호)」)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간호협회(신중검토)

- 보건의료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 직역의 업무를 두고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동 개정안에 찬성함. 다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의 투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위원회에 환자대표의 참여도 필요함.

5) 대한의사협회(반대)

- 의료행위의 다양성, 변동성, 임상현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법원마저 법률에 의한 일률적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장관에 의한 고시로 조정된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남.
- 비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적 결정의 남발로 의료직역 간 갈등을 촉발시키고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

문 의 처

02)6788-5494